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 및 조례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모집이 이뤄져

공고당 평균 2천여 명이 신청하고 있으나,

명부의 유효기간이 짧아 많은 행정력 소모와 함께

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공사감리자의 경우,

지난 연도와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매년 명부 구성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접수가 필요해
현장감리에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집행부서도 별도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로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등
명부 구성에만 평균 약 4개월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는 명부 구성 8개월 만에
다음 기수의 명부 구성 공고를 준비해야 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

공사감리자 명부 구성기간을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하여
공사감리자들의 부담과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